

안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9-306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3. 11. 7.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제안이유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6조 제6항에 맞게 조례 조문 변경

주요내용

- 지원금액 등의 구상(제5조)
(기존) 원인제공자에게 비용 전부를 청구
(변경) 원인제공자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

개정조례안 : 【붙임 1】

신·구조문대비표 : 【붙임 2】

관계법령발췌서 : 【붙임 3】

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사항 없음

예산수반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사전예고(결과) : 의견없음

- 입법예고 : 2023. 08. 04. ~ 2023. 08. 24.

기타 참고사항

- 현행조례 : 【붙임 4】
- 방침결정문 : 【붙임 5】
- 경기도 관련 문서(경기도 사회재난과-4895(2023.4.19.)호) : 【붙임 6】

[붙임 1]

안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안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(지원금액 등의 구상) 중 “비용 전부”를 “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시민안전과
입 안 자	실·과 장 직위·성명	시민안전과장 박 구 범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사회재난팀장 김 순 미
	담 당 자 성명·전화	황 인 욱 (행정 2165)

【붙임 2】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5조(지원금액 등의 구상) 시장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(이하 “원인제공자” 라 한다)에게 제4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금액 등 <u>비용 전부</u>를 청구한다.</p>	<p>제5조(지원금액 등의 구상)----- ----- ----- ----- ---- <u>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</u>-----.</p>